

의안번호	2219098
의 퇴 인	이광희의원
회 답 일	2026.8.13.
추계번호	26D2644

사회재난대책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특별예방대책의 수립·시행)·제8조제5항(특정관리지역의 정비 및 관리)	행정안전부장관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, 병원급 의료기관·아동복지시설·장애인복지시설·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고, 특정관리지역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1조제5항·제6항(국가핵심기반의 보호·관리 등)	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사회재난의 예방 강화에 기여한 관리기관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, 국가핵심기반의 보호·관리에 관한 정보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함께 구축·운영하고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3	제13조(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신고 등)·제15조(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신고 등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, 다중운집시설관리자 및 민간 지역축제 개최자가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수리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7조(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·운영)	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각각 위기징후의 목록을 작성·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표준모델을 연구·개발하여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구축·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	의무규정
5	안 제18조(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)	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계절별·시기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	의무규정
6	안 제23조(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등)·제24조(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)	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업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계 기관·단체·법인의 장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, 관계 기관은 각각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27조(정책협의회의 구성·운영)	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(특별예방대책의 수립·시행)·제8조제5항(특정관리지역의 정비 및 관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조제5항·제6항(국가핵심기반의 보호·관리 등)	
3	제13조(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신고 등)·제15조(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신고 등)	
4	안 제17조(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·운영)	
5	안 제18조(사전 대비태세의 확립 및 유지)	
6	안 제23조(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등)·제24조(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)	
7	안 제27조(정책협의회의 구성·운영)	정책협의회는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협의체로서 소속 공무원 및 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회의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,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경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
2. 상세 사유

□ 특별예방대책의 수립·시행 및 특정관리지역 정비·관리에 대한 지원(안 제6조·제8조제5항)

-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, 병원급 의료기관·아동복지시설·장애인복지시설·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특정관리지역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특별예방대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상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고, 특별예방대책에 포함되는 조치의 내용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정비·보강의 범위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아울러 특정관리지역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역의 정비 내용과 범위, 평균 비용, 지원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국가핵심기반의 평가·포상 및 보호·관리 정보의 구축·운영(안 제11조제5항·제6항)

-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사회재난의 예방 강화에 기여한 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며, 국가핵심기반의 보호·관리에 관한 정보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함께 구축·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, 같은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·운영되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평가·포상의 범위 및 규모, 정

보 구축·운영의 범위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및 민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(안 제13조·제15조)

-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, 다중운집시설관리자 및 민간 지역축제 개최자가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다중운집시설의 범위와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 기준 및 신고 대상 지역축제의 범위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정·심의 대상 시설과 지역축제의 수를 추정하기 어렵고,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계획의 심의·수리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와 1건당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·운영(안 제17조)

- 제정안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위기징후의 목록을 작성·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표준모델을 연구·개발하여 보급하며 필요한 경우 구축·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현행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및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여부 및 확대 규모, 표준모델의 연구·개발 규모와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(안 제18조)

- 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계절별·시기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하며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다만, 관계 기관이 현행법에 근거하여 여름철·겨울철 대책기간 운영 등 유사한 사전 대비 활동을 이미 수행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대비 태세의 내용 및 범위, 대책기간의 운영 방식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(안 제23조·제24조)

-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업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계 기관·단체·법인의 장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, 관계 기관이 각각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협업 지원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 기관·단체·법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현행 대응체계를 통하여 유사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범위 및 규모와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